

광주지방법원 2022. 7. 22 선고 2021가단13689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기원, 이민지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김창

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국

변 론 종 결 2022. 7. 8.

판 결 선 고 2022. 7. 22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/7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5. 10. 31.

접수 제8233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5. 10. 31.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1)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05. 10. 3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I, 채무자를 원고, 채권최고액을 금 130,000,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(광주지방법원 2005. 10. 31. 접수 제82339호. 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’라 한다)를 마쳤다.

나. I은 2016. 3. 13. 사망하였고, I의 처 J은 2020. 12. 12.경 사망하여, I과 J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최종적으로 I을 각 1/7 상속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4,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

원고는, 원고의 남편 K이 I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I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, 이후 원고 측이 시행사업을 하고 있던 ‘목포시 L 건물 전부’를 2006년경 I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어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비롯한 원고와 I 사이의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되었으며, 이에 I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, 갑 제2, 3호증,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

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나.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

원고는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5. 10. 31.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. 10. 31.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.

따라서 피고들은 피고들의 상속지분인 각 1/7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5. 10. 31.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춘화

[별지]

목 록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광주광역시 남구 동[도로명주소] 광주광역시 남구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건물의 번호 :

구조 및 면적 : 철근콘크리트조 84.96㎡

대지권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광주광역시 남구

대38051.6㎡



대지권의 종류 : 소유권

대지권의 비율 : 3805160분의 4884

[말소할 근저당권의 표시 :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5. 10. 31.접수 제82339호로
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]

1) 위와 같이 선택한다.